통합공고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산업부 고시 제2020-123호, 2020.7.27)

제31조(취급자등) ① 의약품등, 의료기기, 화장품 및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출입시 구비요건은 이 고시 제11조에 의한 공통 구비서류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고시에 의한 의약품등 수입자는 약사법 제42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법 제3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물품의 구분	수 입 자	위 탁 자	구 비 요 건
1. ~ 3. (생 략)			
4. 화장품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최초 수입시 구비서류 - 제조 및 판매증명서(다만,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화장품을 병행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번호별로 수출입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동일함을 확인받은 서류) - 화장품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서류(다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서류) - 화장품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류 ○반복수입시 구비서류 - 동일수입자가 기수입 실적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개 정 안

제31조(취급자등) ① ----------

----------.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
----------.

물품의 구분	수 입 자	위 탁 자	구 비 요 건
1. ~ 3. (현행과 같음)			
4. 화장품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최초 수입시 구비서류 - 제조 및 판매증명서(다만,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화장품을 병행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번호별로 수출입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동일함을 확인받은 서류) - 화장품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서류(다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서류) - 화장품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류 ○반복수입시 구비서류 - 동일수입자가 기수입 실적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

			품목의 경우 (2001-83호 신설) - 최초 또는 반복 수입시의 구비서류 - 통합공고 제35조 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 1부 ○CITES에 따른 동식물 가공품이 포함된 품목의 경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류
5. ~ 9. (생 략)			
10. 화장품 원료	○화장품 원료 수입자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원료수입자	○CITES관련 품목에 대하여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수출국이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 ○CITES에 따른 동식물 가공품이 포함된 품목의 경우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류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의 경우 (2001-83호 신설) - 최초 또는 반복 수입시의 구비서류 - 통합공고 제35조 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 1부 ○최초 수입시 구비서류 - 벌크제품의 경우 제조증명서 사본 - 반제품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11. (생 략)			
12. 인체세포 등	○인체세포 등관리업자	○인체세포 관리업자 ○해당 인체세포 등이 함유된 품목에 대한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	○최초 수입시 구비서류 -인체세포관리업허가증 -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증 사본 ○반복 수입시 구비서류 -허가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증 사본 (이하 생략)

			한 품목의 경우 (2001-83호 신설) - 최초 또는 반복 수입시의 구비서류 - 통합공고 제35조 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 1부 ○ <삭 제>
5. ~ 9. (현행과 같음)			
10. 화장품 원료	○화장품 원료 수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원료수입자	○최초 수입시 구비서류 - 벌크제품의 경우 제조증명서 사본 - 반제품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CITES관련 품목에 대하여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수출국이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 ○ <삭 제>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의 경우 (2001-83호 신설) - 최초 또는 반복 수입시의 구비서류 - 통합공고 제35조 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 1부
11. (현행과 같음)			
12. 인체세포 등	○인체세포 등관리업자	○인체세포 관리업자 ○해당 인체세포 등이 함유된 품목에 대한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	○최초 수입시 구비서류 -인체세포등 관리업허가증 또는 제대혈은행 개설허가증 -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증 사본 ○반복 수입시 구비서류 -허가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증 사본 (이하 생략)

② 제31조제1항 구비요건 중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서류로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2001-83호 개정) 1~2 (생 략) ③~④ (생 략)	② ----------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2조----------. 1~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의약품등,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통관절차) ①~② (생 략) ③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 공고하는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통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생 략)	**제33조(의약품등,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통관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다만, 다운로드 받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 공고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는 제외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의약품 등의 검정)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동일함을 확인받은 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다목 또는 라목의 기관으로부터 제조번호별로 제조판매업자가 정한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검사를 필한 후 이를 판매하거나 양도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제34조(의약품 등의 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제35조(의약품등, 의료기기, 화장품의 수입) ①~⑤ (생 략) ⑥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 공고하는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⑦ 의약품 등은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 수입자, 위탁자, 원산지, 제조원, 총금액, HS부호, 품명(원료의약품의 경우에는 일반명 또는 화학명, 인체세포등의 경우에는 인체세포등 유형), 원료약품의 명칭·분량 및 규격(원료의약품의 경우에는 공정서, 수재품목인 경우 공정서 명칭등), 단위 및 수량, 단가, 금액, 제조번호 및 일자, 선적항 및 송화인, 결재기간 및 가격조건, 통관예정일자, 최근 통관예정보고번호, 검체수거 예정일자 및 장소, 기준 및 시험방법	**제35조(의약품등, 의료기기, 화장품의 수입)** ①~⑤ (현행과 같음) ⑥ ---------- 허가(인증·신고 포함)----------. 다만, 다운로드 받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 공고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는 제외한다. ⑦ ----------최초검정기관과

번호와 허가(신고)사항 [별표5(부속서란에 ○이 표시된 조수제외) 및 별표6의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 동·식품의 학명병기], 조건이행 확인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시 부여한 품목기준코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00-75호 개정) 이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는 원료의약품(주성분에 한함)은 동 원료의약품이 사용된 의약품의 품목기준코드를 기재하고 임상시험용의약품등(원료, 대조약, 위약포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화장품(원료포함)은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 수입자, 수입화주, 제조판매업등록번호, 원산지, 제조원, 총금액, HS부호, 품명(화장품원료의 경우에는 INCI name(일반명 또는 화학명), 규격(화장품원료의 경우에는 화장품원료기준집 등 명칭), 성분명 및 배합량(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는 명기해야하며, 제34조제2항에 따라 확인받은 화장품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단위 및 수량, 단가, 금액, 제조번호 및 일자, 선적항 및 송화인, 결재기간 및 가격조건, 통관예정일자, 최근 통관예정보고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5(부속서란에 ○이 표시된 조수제외) 및 별표6의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인 화장품의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00-75호 개정)	⑨ ----------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번호 ----------
⑩~⑭ (생 략)	⑩~⑭ (현행과 같음)
제38조(수출입 특례) ①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6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을 위하여 화장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이 고시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화장품제조판매업자 자격을 갖추어 수입하거나 화장품제조판매업자 자격을 갖춘 자에게 수입대행을 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은 것으로 하며, 이 고시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면제한다.(00-75호 개정)	**제38조(수출입 특례)** ①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자격을 갖추어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자격을 갖춘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관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 설영의 특허를 받은 자로서 특허지역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화장품법 제3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장품	④ 관세법 제174조의 ---------- 화장품

<table>
<tr>
<td>제조판매업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며 이 고시 제33조제2항 및 제35조의 규정을 면제한다.(00-75호 개정)

⑤ (생 략)</td>
<td>책임판매업자 ----------
----------.

⑤ (현행과 같음)</td>
</tr>
<tr>
<td>제59조(요건확인기관등) 요건확인기관 및 수입허가(수출추천)대상은 다음과 같다.

<table>
<tr><th>요건확인
(추천) 기관</th><th>추천대상자
(수출추천 대상자는 별표1에 게기)</th><th>구비 서류</th></tr>
<tr><td>1. 농림축산식품부장관</td><td>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td><td>미곡수입허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td></tr>
</table>
</td>
<td>제59조(요건확인기관등) 요건확인기관 및 수입허가대상은 다음과 같다.

<table>
<tr><th>요건확인
(추천) 기관</th><th>추천대상자</th><th>구비 서류</th></tr>
<tr><td>1. 농림축산식품부장관</td><td>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td><td>1. 미곡수입허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td></tr>
</table>
</td>
</tr>
<tr>
<td>제80조(수출입기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종축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출입할 수 있다.</td>
<td>제80조(수출입기준) 법 제29조제3항----------

----------.</td>
</tr>
<tr>
<td>제102조(적용범위) ① 이 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절에서는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야생생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허가의 취소, 야생생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야생생물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허가의 취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절에서는 "생물다양성법"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생물다양성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생물다양성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등에 대한 수출입, 「유전자원법」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준수 신고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생 략)</td>
<td>제102조(적용범위) ① ----------

수출입, 생물다양성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등에 대한 수출입, ----

----------.

② (현행과 같음)</td>
</tr>
<tr>
<td><신 설></td>
<td>제104조의3(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의 허가) 생물다양성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7의3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용계획서</td>
</tr>
</table>

	2.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송계획서 4.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5.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 방안을 적은 서류 6. 수입 또는 반입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처분 계획서 7. 수입 또는 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 설>	**제104조의4(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의 신고)** 생물다양성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7의3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반입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1. 사용계획서 2.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송계획서 4.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5.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을 적은 서류 6. 수입 또는 반입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처분 계획서 7. 수입 또는 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09조(폐기물의 수출허가·신고) 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4-1의 폐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1-83호 개정) 1. (생 략) 2. 수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운반계약서 <신 설> 3. ~ 6. (생 략) <신 설>	**제109조(폐기물의 수출허가·신고)**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수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2의2. 수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 6. (현행과 같음) 7. 수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사항 중 다음 각호 1의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1. 수출하는 자와 수출하는 자의 성명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1. ---------- 수입하는 자의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2에 의거 별표 14-3의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출폐기물의 운반계획서	2. 수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11조(폐기물의 수입허가·신고) ①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4-1의 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1-83호 개정)	**제111조(폐기물의 수입허가·신고)** ① ----------.
1. 당해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1. ---------- 주문서 사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수입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 운반계약서	3. 수입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7. 수입대행의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	7.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포함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정보자료
<신 설>	1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신 설>	11. 수입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사항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1.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변경	1. ----------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2에 의거 별표 14-3의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입폐기물의 운반계획서	2. 수입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폐기물을 처리하여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필증	7. ----------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사본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16조(적용범위) 이 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이하 이륜차 포함)의 배출가스·소음인증 및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자기인증의 수입절차와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등록된 자동차의 수출입절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116조(적용범위)** ---------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제117조(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인증 및 자기인증) 별표 2에 게기된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소음에 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 및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자기인증을 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에 대한 인증서 제출자 및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한 수입자가 계속하여 동일 차종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7조(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인증 및 자기인증)** ----------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 ---------- ---------- ----------. ---------- ---------- ---------- ----------.
제120조(배출가스·소음인증 및 자기인증의 면제) ① 다음 각호 1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소음인증을 면제한다. 1. (생 략) 2. 주한 외국공관, 외교관, 기타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6. 자동차 제작자, 연구기관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등 주행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고자 수입하는 자동차 7. 전기·태양광 또는 수소등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8.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② 다음 각호 1의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생략한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생략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가대표 선수용 및 훈련용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2. (생 략) 3. (생 략)	**제120조(배출가스·소음인증 및 자기인증의 면제)**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 ---------- 공용 ----------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자동차제작자 및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 등 주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 7. <삭 제> 8.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주거(住居)를 옮기기 ---------- ② ---------- ---------- -----. 다만, 인증생략을 받으려는 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를 받아야 한다. 1. ---------- 자동차 또는 ----------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그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5.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 ---------- ---------- 자동차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원동기 및 차대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6. 국제협약등에 의하여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6. 국제협약 등에 따라 ---------- ---------
7. 제철소, 조선소, 광산, 채석장, 항만시설등 한정된 장소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로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서 운행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7. ---------- 항만, 공항과 그 주변의 한정된 장소 또는 도로---------- 일반 교통---------- ---------- 운행하지 ----------
8. 관세법 제3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되는 자동차로서 동일차종별로 1회에 5대 이하 공매되는 자동차(신규제작 자동차를 경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8. 관세법 제326조에 따라 ---------- ---------- ---------- 자동차. 이 경우 신규로 제작된 자동차를 경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제설용, 방송용, 도로관리용, 전기·통신복구용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동일차종별로 1회 통관대수가 5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9. ---------- 전기·통신복구용 등 공익목적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제작 또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가 동일차종별로 연간 5대 이하가 제작되거나 ---------- 않는 --------
10. 자동차 공해저감을 위하여 성능시험 또는 시범운행용으로 개발하는 전기자동차(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경유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를 말함), 천연가스자동차, 알콜자동차 등. 다만, 동일차종별로 총 50대이하 제작하는 경우에 한함	10. ----- 오염물질 저감---------- ---------- 제작하는 전기자동차(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경유 등 ---------- ---------- 포함한다), 천연가스자동차, 알콜자동차. ---------- 50대 이하를 ---------- 한하고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대를 추가할 수 있다.
<신 설>	11.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자동차수입단체(이하 "자동차수입단체"라 한다)에 소속된 자가 대기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인증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통관횟수 10회 이내에서 수입되는 99대의 자동차(이륜자동차의 경우 1년 이내에 수입되는 500대의 자동차)
<신 설>	1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수입자에 의해 동일시점에 통관된

	동일한 제원의 9대 자동차. 다만,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와 동일시점에 통관한 동일한 제원의 19대
<신 설>	13.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245호)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이륜차와 동일 사양의 동일시점에 통관되는 나머지 이륜자동차
<신 설>	14. 대한민국 국민(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관세법 제96조 및 이사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이사자로 분류되는 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다만, 인증신청일의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모델연도가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동차에 한한다.
<신 설>	15.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또는 한국환경공단(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245호)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중고자동차를 해당 시험모드에 따라 적합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신 설>	16.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개별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신 설>	17.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구입한 자동차를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도록 개조하는 자동차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절 건설기계의 수출입	**제23절 건설·농업기계의 수출입**
제132조(적용범위) 이 절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대상 건설기계의 수출입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132조(적용범위)** ----------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5 및 제64조 별표17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인증 대상 농업기계 원동기가 장착된 농업기계의 수출입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133조(건설기계의 형식승인등) 품목별수입요령 별표 2에 게기된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 형식신고,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이하 "형식승인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제133조(건설기계의 형식승인, 농업기계의 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건설기계의 형식승인등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동일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 품목별수입요령 별표 2에 게기된 농업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국립환경과학원장의 배출가스 인증 및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의 배출가스 인증생략을 받은 원동기가 사용된 농업기계의 수입신고를 받고,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의 검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제134조(제출서류) 건설기계의 형식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시행규칙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타워크레인에 한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4조(제출서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농업기계를 통관하고자 하는 자는 대기법 시행규칙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46절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의 수입**
<신 설>	**제234조(적용범위)** ① 이 절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이 절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를 수입(해외 구매사이트에서 구매 포함)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절에서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이 절에서는 "규칙"이라 한다) 제115조 별표 33 2호와 3호에 따른 제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을 말한다.
<신 설>	**제235조(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의 수입신고 등)** ①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4조제1항 및 규칙 제115조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검사 결과서 사본

	2.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의 수입가격이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의 수입·운반·보관·공급·처리계획서 가.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의 연간 예상 수입량(제조국·제조업체) 및 공급량(공급업체) 나. 법 시행규칙 별표 33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의 처리계획
<신 설>	**제236조(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의 수입금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5조 및 규칙 제117조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의 수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제조기준 검사를 받은 경우 2.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결과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